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
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허가 취소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회관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삭제(안 제12조)

○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.” 삭제

나 설비 및 물품 파손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변상 기준 마련(안 제14조제3항)

○ “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설 또는 설비, 물품 등의 시가에 의한다.” 신설

다 공연(행사)의 무단 영상 및 사진 촬영 방지 규정 신설(안 제17조제5항)

라 별표1 예술회관사용료 “기본시설 사용료” 일부변경

○ “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과 사회교육 및 예술회관의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사용료는 면제한다.” 삭제

○ 기본시설 사용료의 면제 사항 추가

“점심시간(12:00～13:00), 저녁시간(18:00～19:00)은 제외한다.” 추가

마 별표1 예술회관사용료 “부대설비 사용료” 일부 변경

○ 조명효과 “파라이트 1회/개당 2,000원” 사용료를 “공연(행사)조명 1회 60,000원”으로 변경

○ 공연(행사)의 무대설치 및 진행을 위한 운영인력의 사용자 부담 규정 추가

○ “예술회관에서의 여성교육 및 사회교육과 예술회관의 사무실을 둔 성주문화원의 교육 및 회의를 위한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” 규정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다. 기　　타
(1) 입법예고 : 2014. 10. 13 ~ 11. 1(20일간)
(2) 규제심사 : 2014. 9. 18(완료)
(3) 성별영향평가 : 2014. 9. 19(완료)
(4) 관련부서 합의 : 규제개혁추진단

5.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계약 당사자와 완벽한 계약 체결로 책임 소재를 분명하여 갈등 해소로 문화예술회관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

❍ 주요 개정 내용은
- 안 제12조 허가 취소등 사용자에게 불리한 등록규제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 삭제와 안 제14조 피해사실 발견시 시설 또는 설비물품 등 시가에 의한 변상, 안 제17조 허가 없이 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이며,

❍ 특히, 예술회관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 일부 변경은 설비 및 물품 파손시 사용자의 구체적인 변상기준을 마련하고 공연행사의 무단 영상 및 사진 촬영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창조적인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